

1. 개정이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되어 지급분기란을 삭제하고,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신규 업종·소득분류코드를 추가하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단축되어 지급월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XXXX. XX. XX. ~ XX. XX.)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6의2호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3쪽 중 제1쪽)

귀속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번호

①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집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 성명)	② 사업자(주 민) 등 록 번 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연 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⑦ 세액 집계현황		
						⑧ 소득세	⑨ 지방소득세	⑩ 계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코드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외국인 (1·9)	⑮ 지급 연도	⑯ 지급 건수	⑰ (연간) 지급총액	⑱ 세 율	⑲ 소득 세	⑳ 지 방 소득세	㉑ 계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집계										
	소득액 부정수 연간 집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해야 합니다.

2. 건물 소득 부정수되는 건수·금액은 "소득 부정수 연간합계"란에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연간 총지급액 계"와 "소득자별 연간 소득내용(소득 부정수 포함) 집계"는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 소득인원란은 ⑫ 소득자 성명의 인원을, ⑤ 연간 총지급건수란은 ⑯지급건수(소득 부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각각 적으며, 소득자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⑩ 업종코드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종목	업종 코드	종목	업종 코드	종목	업종 코드	종목	업종 코드	종목	업종 코드	종목	업종 코드
저술가	940100	성악가	940305	학원강사	940903	기타자영업	940909	목록관리사	940915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화가관련	940200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306	직업운동가	940904	다단계판매	940910	행사도우미	940916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작곡가	940301	연예보조	940500	봉사로 수취자	940905	기타 모집수당	940911	심부름용역	940917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배우	940302	자문·고문	940600	보험설계	940906	간병인	940912	퀵서비스	940918	대출모집인	940923
모델	940303	바둑기사	940901	음료배달	940907	대리운전	940913	물품운반	940919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가수	940304	꽃꽂이교사	940902	방문판매원	940908	캐디	940914	병의원	851101	방과후강사	940925

·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기·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 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5. ⑩ 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는 "1"을, 외국인인 경우는 "9"를 적습니다.

6. ⑩ 세율란에는 3%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봉사로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로 수입금액은 5%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4 -

작성 방법

- | 종목 | 업종
코드 | 종목 | 업종
코드 | 종목 | 업종
코드 | 종목 | 업종
코드 | 종목 | 업종
코드 | 종목 | 업종
코드 |
|------|----------|-----------------|----------|------------|----------|------------|----------|-------|----------|---------------|----------|
| 저술가 | 940100 | 성악가 | 940305 | 학원강사 | 940903 | 기타자유업 | 940909 | 목욕관리사 | 940915 | 학습지
방문강사 | 940920 |
| 화가관련 | 940200 |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 940306 | 직업운동가 | 940904 | 다단계판매 | 940910 | 행사도우미 | 940916 | 교육교구
방문강사 | 940921 |
| 작곡가 | 940301 | 연예보조 | 940500 | 봉사료
수취자 | 940905 | 기타
모집수당 | 940911 | 심부름구역 | 940917 | 대여제 품
방문점원 | 940922 |
| 배우 | 940302 | 자문·고문 | 940600 | 보험설계 | 940906 | 간병인 | 940912 | 퀵서비스 | 940918 | 대출모집인 | 940923 |
| 모델 | 940303 | 바둑기사 | 940901 | 음료배달 | 940907 | 대리운전 | 940913 | 물품운반 | 940919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 940924 |
| 가수 | 940304 | 꽃꽂이교사 | 940902 | 방문판매원 | 940908 | 캐디 | 940914 | 병의원 | 851101 | 방과후강사 | 940925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3)] <개정 2021. 7. 1.> (앞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 보관용 [] 지급자 보관용)

외국인 여부 (예, 아니오)

[illegible]

위의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지급(영수)합니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1. 지방채 발행액	1,000,000,000,000	1,000,000,000,000	1,000,000,000,000
2. 지방채 상환액	1,000,000,000,000	1,000,000,000,000	1,000,000,000,000
3. 지방채 발행액 - 지방채 상환액	0	0	0

징수의무자(지급자) (서명 또는 인)

정수의무자(지급자) _____ (서명 또는 인)

※ 이 자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 소득자 보관용에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자)란의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외국인의 경우는 우측 상단에 외국인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⑥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나. ⑪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가 2021년도인 경우 "2021"을 적습니다.

다. ⑫ 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 "○"를 표시합니다.

⑫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해당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를 표시합니다.

⑬ 근무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⑭ 근무일수란은 지급월과 ⑬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일간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 지급월 4월에 "○"를 표시하고, 지급월 4월, 근무월에는 3월, 근무일수에는 15일을 적습니다.

라. ⑮ 총지급액(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1월15만원)을 포함하고, ⑯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합니다]의 월별(지급월+근무월)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⑯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지급월+근무월)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마. ⑰ 소득세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적으며, 세금은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반기별 신고 납부자는 1년에 1월 및 7월에 두 번만 납부합니다.

바. ⑲ 지방소득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급여액이 1월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으므로 ⑮ 총지급액(과세소득)란과 ⑯ 비과세소득란만 적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며, 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⑮ 총지급액(과세소득)란과 ⑯ 비과세소득란만 적습니다(소득 부정수).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월 15만원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으로 지급한 경우

(1) [(200,000원 - 150,000원) × 6%] × 45% = 1,350원

※ 약식 계산 : (200,000원 - 150,000원) × 0.027 = 1,350원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원(1,350원 × 7일 = 9,450원)

(3) 지방소득세 : 940원(소득세의 10%)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가.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에 2부를 작성하여 "지급자보관용"은 지급하는 자가 보관하고, "소득자보관용"은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명세(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소득자보관용) 자료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1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12월 지급으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월별 제출집계표]

지급자	①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 업 자 등록번호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 (주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① 월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⑧ 귀속연도		⑨ 지급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⑩ 일용근로자수 (⑪번에 적은 칸의 개수, 단 동일인의 경우 1명으로 합계)		⑪ 제출자료건수 (⑫번에 적은 칸의 개수)		⑫ 총지급액 합계 (⑬번 합계)		⑬ 비과세소득 합계 (⑭번 합계)		원천징수세액 합계					
								⑭ 소득세 (⑮번 합계)		⑮ 지방소득세 (⑯번 합계)			
명		건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적은 지급명세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⑮ 번호	⑰ 성명	⑱ 전화 번호	⑲ 외국인 여부	⑳ 주민등록 번호	귀속		㉓ 총지급액 (과세소득)	㉔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㉑ 근무월				㉒ 근무일수	㉕ 소득세			㉖ 지방소득세	
1					-					
2					-					
3					-					
4					-					
5					-					
6					-					
7					-					
8					-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서식(3)]를 근로자 별·월별(자급월→근무월)로 합계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외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㉑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으며, ㉑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를 표시합니다.
- ㉒ 일용근로자수(동일인을 여러번 작성한 경우 근로자 1명으로 합계)란부터 ㉒ 지방소득세란까지는 「2. 소득자 인적 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의 합계 사항을 적습니다.
- ㉓ 외국인 여부란은 일용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해야 하며(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㉓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㉔ 지급월란은 일용근로자에게 분가 내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㉔ 근무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㉔ 근무일수란은 지급월과 ㉔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일간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 지급월 4월에 "○"를 표시하고, 지급월 4월, 근무월에는 3월, 근무일수에는 15일을 적습니다.
- ㉕ 총지급액(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1일15만원)을 포함하고, ㉕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합니다]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㉖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자급월→근무월)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㉗ 소득세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6%)]×45%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자급월→근무월)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일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5만원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으로 지급한 경우

(1) [(200,000원 - 150,000원) × 6%] × 45% = 1,350원

※ 약식 계산 : (200,000원 - 150,000원) × 0.027 = 1,350원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원(1,350원 × 7일 = 9,450원)

(3) 지방소득세 : 940원(소득세의 10%)

- 소득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㉗ 지방소득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일용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어서 제3쪽에 작성합니다.
- ※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1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12월 지급으로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월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㉑ 번호	㉒ 성명 전화번호	㉓ 외국인 여부	㉔ 주민등록 번호	귀속		㉕ 총지급액 (과세소득)	㉖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㉑ 근무 월	㉒ 근무 일수			㉓ 소득세	㉔ 지방소득세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일용근로자가 많아서 제1쪽의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①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원천징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지급 내용	⑧ 귀속연도	년	⑨ 지급 시기 [] 상반기(1월~6월) [] 하반기(7월~12월)
	⑩ 근로자 총 인원	명	⑪ 과세소득 (⑬번 합계 + ⑭번 합계)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일련 번호	⑫ 주민등록번호	⑭ 내·외국인	⑮ 거주지국	⑯ 근무 기간	⑰ 지급월	⑱ 급여 등	⑲ 인정상여
	⑬ 성명	⑮ 거주자구분	⑰ 거주지국 코드				
1				-	1월/7월		
					2월/8월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합계		
2				-	1월/7월		
					2월/8월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합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해당 연도의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 : 7월 31일까지 제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분 : 1월 31일까지 제출
-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아·아닙니다(예: 2020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1년 1월에 지급한 경우 마제출)
- ⑧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 ⑨ 지급 시기란은 근무에 대한 소득을 지급한 반기에 [√]를 표시합니다.
- ⑪ 과세소득란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⑱ 급여 등의 합계 금액과 ⑲ 인정상여의 합계 금액을 더해서 적습니다.
- ⑭ 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1"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9"를 적습니다.
- ⑮ 거주자 구분란에는 거주자는 "1"을 비거주자는 "2"를 적습니다.
- ⑮ 거주자구분과 ⑮ 거주자구분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와 거주자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 ⑯ 근무기간은 월일로 적습니다.(예: 01.01. - 06.30.)
- ⑱ 급여 등란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에서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⑲ 인정상여란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적습니다.
- ⑱ 급여 등란과 ⑲ 인정상여란에는 지급월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예: 급여를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 경우 지급월을 구분하여 각각 100만원씩을 작성)
※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작성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합니다.(예: 2021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하반기분 간이지급명세서의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2년 상반기분 제출시에는 제외)
- 상반기 중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반기 근무에 대한 소득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되, ⑯ 근무기간란에 해당 소득의 지급일을 적습니다.(예: 2021년 6월 30일 퇴사한 자에게 2021년 6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1년 7월 20일에 지급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 2021.07.20. - 2021.07.20.)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부표 **(근로소득)** **([]지급자 보관용 []지급자 제출용)**

③ 사업자등록번호		⑧ 귀속연도		⑨ 지급시기			
				[] 상반기(1월~6월) [] 하반기(7월~12월)			
일련 번호	⑫ 주민등록번호	⑭ 내·외국인	⑮ 거주지국	⑯ 근무 기간	⑰ 지급월	⑱ 급여 등	⑲ 인정상여
	⑬ 성명	⑮ 거주자구분	⑰ 거주지국코드				
3				-	1월/7월		
					2월/8월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합계		
4				-	1월/7월		
					2월/8월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합계		
5				-	1월/7월		
					2월/8월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합계		
6				-	1월/7월		
					2월/8월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합계		

※ 근로자가 많아서 제1쪽의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지급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자 보관용 []지급자 제출용)**

귀속	년	[]상반기
		[]하반기

①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 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반가 소득인원	⑤ 반가 총 지급액 (⑫번 합계)
⑥ 귀속연도		년	⑦ 지급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월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⑧ 업종 코드	⑨ 소득자 성명(상호)	⑩ 주인(사업자) 등록번호	⑪ 내·외국인	⑩ 거주지국	⑫ 지급액	⑬ 세율	⑭ 소득세	⑮ 지방 소득세	⑯ 계 (⑭+⑮)
					⑪ 거주지국코드					
1										
2										
3										
4										
5										
6										
7										
8										
9										
10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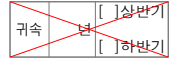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해당-연도의 반가~~에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을 지급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사업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아 아닙니다.(예: 2020년 12월 사업에 대한 소득을 2021년 1월에 지급한 경우 미제출)~~
-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합니다.(예: 2021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2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제외)
2. ④ 반가 소득원란은 ⑨ 소득자 성명의 인원을 적습니다.
3. ⑥ 업종코드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35계 업종코드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종목	업종 코드	종목	업종 코드	종목	업종 코드	종목	업종 코드	종목	업종 코드	종목	업종 코드
저술가	940100	성악가	940305	학원강사	940903	기타자영업	940909	목욕관리사	940915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화가관련	940200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306	직업운동가	940904	다단계판매	940910	행사도우미	940916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작곡가	940301	연예보조	940500	봉사료 수취자	940905	기타 모집수당	940911	심부름용역	940917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배우	940302	자문·고문	940600	보험설계	940906	간병인	940912	퀵서비스	940918	대출모집인	940923
모델	940303	바둑기사	940901	음료배달	940907	대리운전	940913	물품운반	940919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가수	940304	꽃꽂이교사	940902	방문판매원	940908	캐디	940914	병의원	851101	방과후강사	940925

-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기·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4. ⑪ 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1"을, 외국인인 경우에는 "9"를 적습니다.
5. ⑫ 지급액란에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그 지급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건별 소액 부정수(1천원미만)되는 지급 금액도 적어 제출합니다.]
6. ⑬ 세율란에는 3%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를 적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부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자보관용][지급자제출용])

⑥ 귀속연도	년	⑦ 지급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월별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⑧ 업종 코드	⑨ 소득자 성명(상호)	⑩ 주인(사업자) 등록번호	⑪ 내·외국인	⑫ 거주지국 (⑪) 거주지국코드	⑬ 지급액	⑭ 세율	⑮ 소득세	⑯ 지방 소득세	⑰ 계 (⑭+⑮)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 26의1. (생 략) 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u>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u> 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 27. ~ 44. (생 략)	제100조(일반서식) ----- -----. 1. ~ 26의1. (현행과 같음) 26의2. ----- <u>간이지급명세서</u> ----- ----- -----. 27. ~ 44. (현행과 같음)